○○초 교육환경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하도급 대금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0가합○○○○○[1심]	사건유형	공사대금
원 고	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23. 12. 12. 원고일부승	비 고	
사건개요	❍ 원고는 인천○○초 교육환경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의 도급자인 소외 주식회사 □□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, □□건설은 원고에게 매월 1회씩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, ☆☆교육지원청의 계속적인 설계변경과 추가공사,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자재 입고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한의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공사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아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공사 중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, 원고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에 따라 발주처에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함.		
주 문	❍ 피고는 원고에게 194,668,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8. 29.부터 2023. 12. 12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❍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❍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❍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		
판결이유	❍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함. - 2020. 6. 6.경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였고, 이후 □□건설이 잔여 공사를 직접 완료하였으므로,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인 210,106,1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. ❍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,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.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음. - 이 사건 판넬공사 중 일부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하자가 존재하는 점,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5,438,000원인 점, 이 사건 판넬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□□건설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5,438,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.		